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위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46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주요 검토사항	3
※ 참고자료	5
1.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현황	5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23.

다. 회 부 일 : 2024. 1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명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 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60조의3).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된 것을,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 경우는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경우는 지방공무원으로 보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 3제4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 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 제공무원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2. 주요 검토사항

-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한시적으로 방역관으로 임명하거나,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한시적으로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각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생략)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¹⁾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 현행 제60조의3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 신설된 후 2020년 3월 4일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방역·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을 추가하였고, 2020년 9월 29일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도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임명주체에 따라 각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 왔음.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시적으로 임명하는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²⁾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현행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³⁾⁴⁾

□ 참고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을 보면, 중앙 방역관은 17명, 역학조사관 107명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방역관은 96명, 역학조사관은 443명(시·도 93명, 시·군·구 350명)이며, 한시적 종사명령 발령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운영한 지방자치단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907명임(<참고자료1> 참조).

문 의 처
02)6788-5501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질병관리청도 같은 의견임.

4)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있음.

참고 1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현황

□ 방역관 현황

○ 중앙 방역관('24.12월 기준)

- 중앙역학조사반 및 전문역학조사반과 연계, 감염병 대응 소관 국장 및 부서장 총 **17명**이 방역관으로 **당연직** 임명됨

○ 지자체 방역관('24.7월 기준)

-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서 총 **96명**이 방역관으로 임명되어 업무 수행 중임

(단위: 명)

지자체	임명	지자체	임명
합계	96		
서울	8	경기	18
부산	13	강원	8
대구	7	충북	4
인천	1	충남	15
광주	2	전북	9
대전	3	전남	16
울산	-	경북	6
세종	1	경남	5
-		제주	1

□ 역학조사관 현황('24.12월 기준)

○ 총괄표

(단위: 명)

구분	합계	중앙	시·도	시·군·구
인원수	550	107	93	350

○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

(단위: 명)

구분	시도 역학조사관			시군구 역학조사관		
	합계	수료	수습	합계	수료	수습
합계	93	20	73	350	138	212
서울	7	2	5	48	22	26
부산	11	1	10	18	7	11
대구	8	0	8	10	9	1
인천	8	4	4	11	7	4
광주	4	0	4	6	0	6
대전	4	1	3	12	5	7
울산	2	2	0	6	4	2
세종	7	0	7	-	-	-
경기	9	6	3	101	57	44
강원	3	0	3	32	3	29
충북	3	1	2	24	5	19
충남	3	0	3	24	4	20
전북	5	1	4	11	2	9
전남	11	0	11	17	0	17
경북	3	2	1	14	8	6
경남	2	0	2	16	5	11
제주	3	0	3	-	-	-

□ 한시적 종사명령 발령 현황

- 코로나19 위기 당시 각 지자체별로 한시적 종사명령을 발령하여, 총 907명의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함.

○ 시도 및 시·군·구 한시적 종사명령 발령 인원('19.12월~'24.12월)

(단위: 명)

구분	합계	시도	시군구
	임명 인원*	임명 인원	임명 인원
합계	907	249	658
서울	329	54	275
부산	4	4	0
대구	15	15	0
인천	16	16	0
광주	0	0	0
대전	0	0	0
울산	2	2	0
세종	61	61	-
경기	299	21	278
강원	54	10	44
충북	5	0	5
충남	23	1	22
전북	10	8	2
전남	3	3	0
경북	4	3	1
경남	50	19	31
제주	32	32	-

* 총 907명 중 역학조사관 906명, 방역관 1명(전북)